

시 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530	주무관	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결재일자	2013. 4. 3.	나지혜	박영숙	박유미	04/03 김창보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시립병원운영팀장 약무팀장		구장회 정지애
방침번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2013년도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계획(안)

2013. 3

복 지 건 강 실
(보건의료정책과)

사건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 시 민 : 유 ■ (야간 휴일 진료기관 및 약국 이용 시민) 무 □
	●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
	● 전 문 가 : 유 □ () 무 □
	● 음 브 즈 만 : 유 □ () 무 □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 법 령 규 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무 □
	●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 자 원 의 활 용	● 중 앙 부 처 : 유 □ () 무 □
	● 민 간 단 체 : 유 □ () 무 □
	● 기 업 : 유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 관 계 기 관 : 유 □ () 무 □
	● 민 간 단 체 : 유 ■ (서울시 의사회 서울시 약사회) 무 □
	● 시 산 하 기 관 : 유 ■ (시립병원 9개소, 자치구 보건소) 무 □

2013년도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 계획(안)

야간과 휴일 일차진료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하여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으로 시민들의 의료서비스와 의학정보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서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함

I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 시장공약(5-3-1) 1개구 1개소 야간 휴일 클리닉 운영
 - 취약계층 · 직장인을 위한 야간 휴일 클리닉 자치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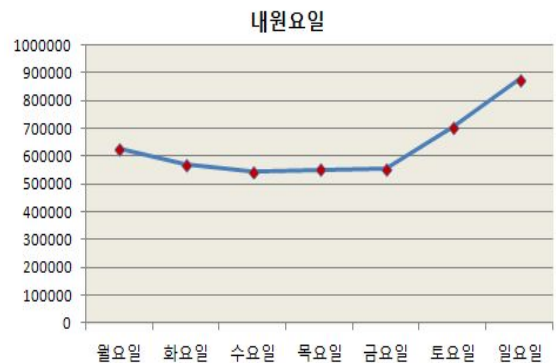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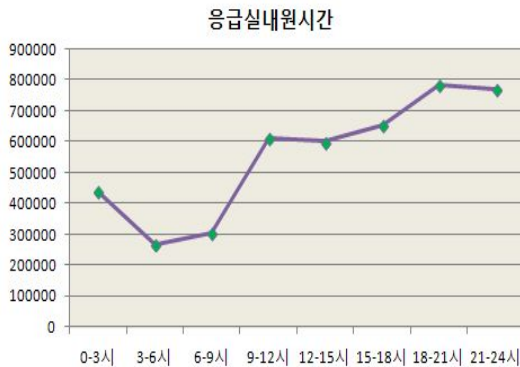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응급실 과밀화로 인한 중증 응급환자 치료 지연 및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의 80%가 경증환자임
 - 응급실 과밀화를 초래하여 장시간 대기
 - 일차진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진료체계 구축 필요
- 경증 환자 외래진료 담당하는 의원급은 오후 7시 이전에 63%가 진료가 끝나고 특히 야간 휴일에는 진료기관 현저히 부족
 - 맞벌이 부부증가, 40시간 근무제 시행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야간 휴일 진료 요구도 증가
- 야간·휴일 외래진료의 부재로 인한 경증외래환자의 불편감 초래
 - 서울시 24시간 진료기관은 168개소이나 일차 진료기관은 거의 없음
 - 야간, 휴일에 발생한 고열(소아) 환자 등은 불안하고 마땅히 도움 받을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방문

○ 응급실 내원 환자

- 응급실 내원자 중 38.4%는 야간·휴일 진료기관이 없어 방문함
- 소아환자 비율(27.4%)이 가장 많고, 18시 이후 야간 시간대 이용(58%)이 가장 많음
- 응급실 진료 후 귀가하는 경증환자가 83% 차지함
- 소아는 부모가 퇴근 후 외래진료를 받기 어렵고 응급실 환경은 소아진료에 부적합

☞ 경증환자나 비응급환자가 야간·공휴일에 방문할 의료기관이 없어 부득이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음



(근거: 보건복지부.2013)

II '12년 추진결과

□ 추진경위

- '12년 야간·휴일 진료기관 추진계획 수립 '12. 08. 17
-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에 관한 일제 홍보 실시 '12. 10 ~
- 민간협력을 통한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12. 10. 26
- 야간·휴일 진료기관 사업 시행 '12. 11. 01
- 자치구 담당자 회의 '12. 11. 07
- 야간·휴일 진료 모니터링 '13. 01~02

□ 추진실적

○ 사업실적(기간 : 2012.11.1~12.31)

구분	지정기관수 (개소)	진료인원*(명)			진료비 지급*(천원)		
		사업량	실적	달성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소계	45	40,000	44,193	110%	213,000	233,535	109%

* : 사업실적은 총 사업량 및 예산액중에서 사업기간 동안(2개월)의 사업량과 예산액을 산출하였음

○ 진료과목별 운영실적(단위 : 건)

구분	합계	11월	12월
계	44,193(100%)	21,618	22,575
내과	18,235(41.3%)	8,372	9,863
가정의학과	10,899(24.7%)	5,732	5,167
소아과	8,656(19.6%)	4,742	3,914
정형외과	4,025(9.1%)	1,639	2,386
일반외과	814(1.8%)	482	332
기타	1,564(3.5%)	651	913

○ 진료시간별 운영실적(단위 : 건)

구분	합계	11월	12월
합계	44,193(100%)	21,618(48.9%)	22,575(51.1%)
평일	19-22시	14,686(33.2%)	7,400
	22-23시	618(1.4%)	282
토, 일, 공휴일	28,889(65.4%)	13,936	14,953

○ 약국 조제비 청구 내역(단위 : 건)

구분	합계	11월	12월
청구건수	17,715(100%)	8,907(50.2%)	8,808(49.8%)

○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홍보실적

홍보방법	수량
야간 휴일 진료기관 알림판 제작 배부	26건
의료기관 안내 바인더 제작	600건
홈페이지 청구시스템 구축 및 팝업창 생성 안내	10건
유관기관 홍보안내문 발송	332건
홍보물품 제작(홍보용 배너, 장바구니, 건강안내수첩, 물티슈 등)	63,800건
홍보책자 발간(리플렛, 안내지도책 등)	34,300부
보건소 LED전광판, 구 홍보전광판 표출	2개소

- 자치구 홍보사례

진료비 청구시스템 구축	자치구 소식지 보도자료	LED 홍보문구 표출
야간 휴일 진료기관 안내 판넬, 볼펜, 각티슈 등 다양한 홍보물품 제작·배포		

III 목표 및 추진체계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비전

함께 만드는 건강서울, 함께 누리는 건강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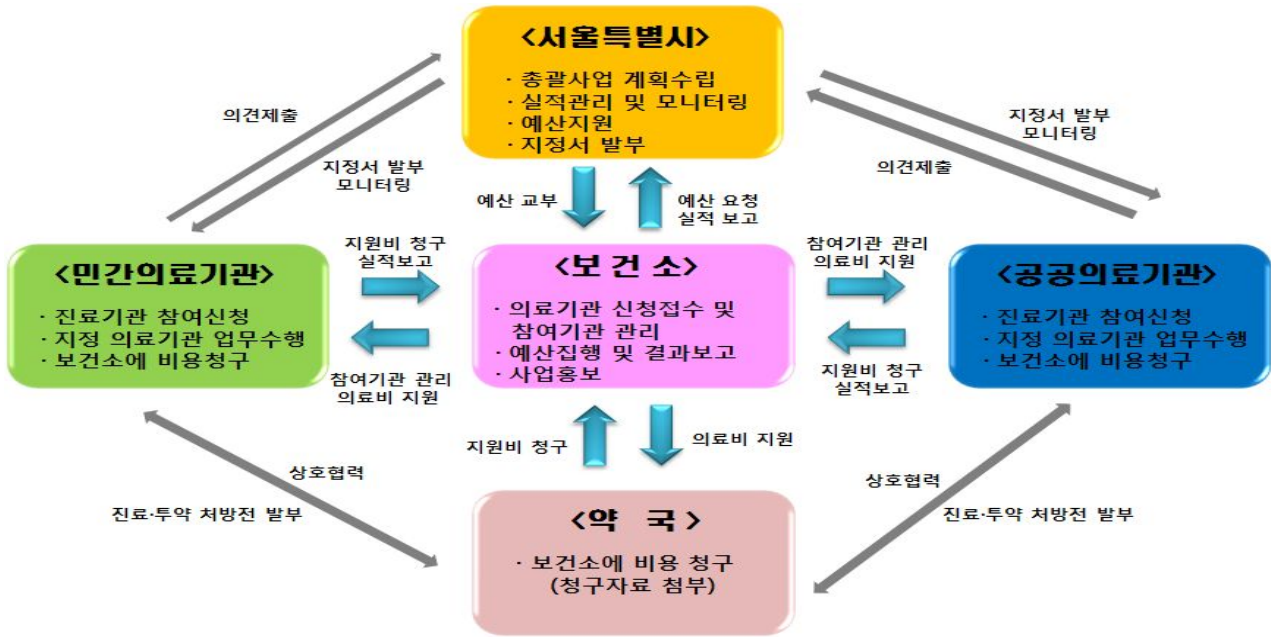
사업
목표

- 민간협력기관 자치구당 2개소씩 운영 확대
- 공공의료기관 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13년 야간휴일 진료 300,000건 달성

추진
방향

- 야간 휴일 진료기관 확대 운영
- 관할 자치구 통한 야간 휴일 참여기관 신청 및 관리
- 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
-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 추진체계도



IV

세부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3. 1. 1 ~ 12.31.(연중)

□ 참여기관 : 50개 병·의원(붙임 1)

○ 전년대비 11.1%증가('12년 45개소)

□ 사업내용

○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경증환자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 운영시간

구 분		운영시간	비고
야간진료기관		19시 ~ 22시	
		22시 ~ 23시	
휴일진료기관	토요일	15시 ~ 18시	
	일, 공휴일	09시 ~ 18시	

- 지정기관은 운영시간을 준수하며, 임의 변경을 금함

○ 진료대상

-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경증환자의 일차진료(일반적 처치 및 처방)

❖ 경증환자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제1호
별표 1의 경우를 제외(참조 : 붙임5)

○ 지원내용

- 야간 휴일 경증환자 응급실이용에 따른 건강보험재정과 환자부담 경감을 위
해 야간 휴일 의료기관, 약국에 인센티브 지원
- 지원기준 : "진료접수시간" 기준으로 지원시간내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

- 의료기관 : 평일19시~23시, 토요일 15시~18시, 일요일(공휴일 09시~18시)
- 약 국 : 야간 휴일 진료 의료기관 연계되어 처방된 약국 이용자

- 지원내역

- 의료기관 : 진료환자 1건당(연인원) 6,000원
- 약국 : 조제 1건(연인원) 1,000원(별도 지정없이 청구가 있을시 지원)

❖ 평일 야간 22시~23시 진료 및 조제기관은 전당 지원금 50% 가산 지원

- 심야시간대의 진료 및 대기에서 오는 피로 누적과 위험부담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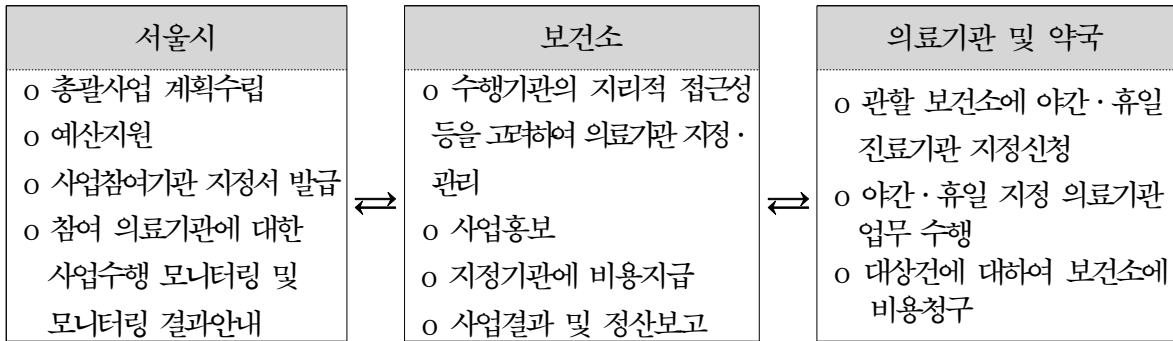
구분	운영시간	의료기관	약국(조제료)	비고
평일 야간	19시~22시	6,000원/건	1,000원/건	
	22시~23시	9,000원/건	1,500원/건	
토요일	15시~18시	6,000원/건	1,000원/건	
일, 공휴일	09시~18시	6,000원/건	1,000원/건	

- 운영시간 내에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건 : 접수증 시간 기준 등
- 운영시간 마감 직후 이용에 대한 청구건은 지급 심의 시 탄력 적용

○ 청구 및 지원방법

- 보건소 홈페이지에 기 구축된 청구시스템을 통한 지원비 청구 또는
수기 청구(지정진료기관, 약국 ⇒ 보건소)
- 지원비 청구 서식(붙임 5)확인 후 지급(보건소 ⇒ 지정진료기관, 약국)

□ 사업 수행 절차



□ 민간 협력의료기관 정비 ⇒ 2012 참여기관中 4개소 제외

○ 2012년도 사업수행기관 정비

- 근거 :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모니터링 결과
 - 내용 : '12년도 사업수행기관 중 야간·휴일 진료시간 시행여부
 - 방법 : 건강콜센터 근무자가 매4일 마다 20:00 ~ 22:00 사이에 지역별로 선정하여 유선으로 실시
 - 결과 : 총 실시건수 493건(1개소당 평균 10~11회)
 - 시행 : 426건(86.4%)
 - 미흡 : 29건(5.9%) - 20시 이전 진료마감, 응급실로 운영(병원급), 1시간 조기종료 등
 - 미시행 : 38건(7.7%) - 마트휴무 등 사전신고 없이 미시행
 - 미시행을 40% 이상 의료기관은 참여기관에서 제외
- ⇒ 참여제외기관 4개소 - 종로구 로이병원(66.7%), 중구 정연의원(40.0%)
 성북구 성북성심신경과 의원(61.5%)
 송파구 송파병원(45.5%)

○ 추가선정기준 : 자치구별 참여신청기관 중 선정하여 지정

- (1순위) 평일 야간, 토, 일요일(공휴)일 진료 가능한 1차 의료기관
- (2순위) 1차 의료기관 중 평일과 주말 진료기관을 동일 선정 불가시 평일과 주말(공휴)을 별도 선정 가능
- (3순위) 응급의료기관으로 미지정된 응급실 운영기관(병원급)

□ 공공부분 협력을 통한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

- 참여기관 : 동부병원
 - 민간협력 미충족 지역에 대한 공공부분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
- 방 법 : 자치구 보건소로 참여 신청서 제출
 - 민간 협력 기관이 적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권역 우선 선정
 - 유동인구 많은 곳, 접근성이 높은 시립병원 선정·확대
- 지원내용
 - 민간 협력 수행 의료기관 지원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진료비지원, 실적보고 및 모니터링

- 진료비 지원 : 매월 1회
 - 지정진료기관의 청구서식에 의거 매월 지급
- 실적보고 : 분기(분기익월 5일까지)
 - 자치구 보건소 ⇒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
- 모니터링 : 수시
 - 사업시행기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사업수행 현황 점검 및 건의사항 수렴, 사업 수행 절차 등 교육 실시
 -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고, 건의사항은 검토 후 적극 반영
 - 수행기관 : 서울콜센터, 시정모니터단

□ 사업 홍보

- 서울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
 - 협력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청 등
- 25개 자치구 통한 홍보
 - 「서울 건강콜」 등 타사업과 연계함으로써 홍보 효과 상승
 - 야간 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에 대한 통일된 메시지 전달
 - 리플렛, 포스터 등
- 시민단체 협조를 통한 야간 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홍보
 -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시민건강위원회 등

V

예 산

□ 총 사업비 : 5,096백만원(시비 100%)

(단위: 백만원)

사업명	편성목		총액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기관운영비	4,237
		약국운영비	709
		홍보자료제작비	150
			5,096

VI

향 후 계 획

- 야간 휴일 진료기관 정비(변경 및 추가지정) : '13. 3월 중
- 야간 휴일 진료 운영기관 실무자(의사,간호사)간담회 : '13. 4월 중
 - 사업시행 현황 및 세부내용 등 홍보
 - 우수사례 발표 및 운영상의 문제점 논의, 건의사항 청책
- 자치구 야간 휴일 클리닉 담당자 사업설명회 : '13. 4월 중
- 야간 휴일 진료기관 확대운영 : '13. 4월~
 - 상·하반기 현장 점검 및 세부내용 교육 실시
 - 사업시행 의료기관 인근 약국에 사업 홍보(서울시약사회 협조)
- 진료기관 모니터링 및 점검 시행 : 4월, 10월(2회)
- 운영 정산 : '14. 1월

- 붙 임 : 1. 2013년도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현황 1부.
 2. 지정서 양식 1부.
 3. 자치구별 사업량 및 예산배정 현황 1부.
 4. 기관별 모니터링 결과 1부.
 5. 지원비 청구 양식 1부.
 6. 관련규정 발췌 1부. 끝.

【붙임 1】

□ 2013년도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현황

연번	구별	지정번호 (연도-직제-연번)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진료지정현황		
					평일	토요일	일, 공휴일
1	종로구	12-1-2	마로니에의원	02-744-4881	19시~22시	15시~18시	
2	중구	13-2-1	더드림산부인과의원	02-2238-7700	19시~22시	15시~18시	09시~18시
3	용산구	12-3-1	보광연세의원	02-798-0022	-	15시~18시	09시~18시
4		12-3-2	금강아산병원	02-799-5000	-	15시~18시	09시~18시
5	성동구	12-4-1	서울연합의원	02-2282-0365	19시~22시	15시~18시	09시~18시
6		12-4-2	이안힐텍소아청소년과의원	02-498-7582	-	15시~18시	09시~18시
7		13-4-1	아이들소아청소년과의원	02-2298-0144	-	15시~18시	09시~18시
8	광진구	12-5-1	제니여성의원	02-461-5677	19시~22시	-	-
9		13-5-1	류마내과의원	02-458-7588	19시~22시	15시~18시	09시~18시
10	동대문구	12-6-1	서울연세의원	02-966-1612	19시~22시	15시~18시	09시~18시
11		12-6-2	연세이문소아과의원	02-962-3062	19시~22시	15시~18시	09시~18시
12		13-6-1	동부병원	02-920-9114	19시~23시	15시~18시	09시~18시
13	중랑구	12-7-1	연세플러스의원	02-3421-3330	-	15시~18시	09시~18시
14		13-7-1	장스내과	02-493-4102	-	15시~18시	09시~18시
15		13-7-2	장스소아청소년과의원	02-490-4161	-	15시~18시	09시~18시
16	성북구	12-8-2	성북중앙병원	02-919-3404	19시~23시	15시~18시	09시~18시
17	강북구	12-9-1	서울병원	02-980-1181	19시~23시	15시~18시	09시~18시
18	도봉구	12-10-1	도봉병원	02-3492-3250	19시~23시	15시~18시	09시~18시
19		12-10-2	바로선병원	02-1666-5853	19시~23시	15시~18시	09시~18시
20	노원구	12-11-1	메디홀즈의원	02-978-9922	19시~23시	15시~18시	09시~18시
21		12-11-2	365열린의원	02-976-3658	19시~23시	15시~18시	09시~18시
22	은평구	12-12-1	서울다나의원	02-355-5416	-	15시~18시	09시~18시
23		12-12-2	기분좋은연세365의원	02-372-0365	19시~23시	15시~18시	09시~18시
24	서대문구	12-13-1	연세365의원	02-733-1365	-	15시~18시	09시~18시
25	마포구	12-14-1	합정연세365의원	02-326-0365	19시~23시	15시~18시	09시~18시
26		13-14-1	에스엠씨 정형외과	02-374-311	19시~22시	15시~18시	09시~18시
27	양천구	12-15-1	지성의원	02-2645-8247	19시~23시	15시~18시	09시~18시
28	강서구	12-16-1	뉴강서성심병원	02-2665-0911	19시~23시	15시~18시	09시~18시
29		12-16-2	이화플러스의원	02-3665-0965	-	15시~18시	09시~18시
30		12-16-3	연세메디플러스의원	02-3662-3040	-	15시~18시	09시~18시
31	구로구	12-17-1	김형수의원	02-2060-9111	19시~22시	15시~18시	09시~18시
32	금천구	13-17-1	명가소아청소년과	02-3286-5008	-	15시~18시	09시~18시
33		13-17-2	뉴연세여성병원	02-891-1801	19시~22시		
34	영등포구	12-19-1	서울복지병원	02-845-0777	19시~23시	15시~18시	09시~18시
35		13-19-1	서울대윤병원	02-841-0101	19시~23시	15시~18시	09시~18시
36	동작구	12-20-1	동작경희병원	02-822-8112	19시~23시	15시~18시	09시~18시
37		12-20-2	정동병원	02-810-7900	19시~23시	15시~18시	09시~18시
38	관악구	12-21-1	사랑의원	02-880-0119	19시~23시	15시~18시	09시~18시
39		12-21-2	강남중앙병원	02-853-4600	19시~23시	15시~18시	09시~18시
40	서초구	12-22-1	청해의료재단 제일병원	02-586-5557	19시~23시	15시~18시	09시~18시
41	강남구	12-23-1	제일정형외과병원	02-501-6868	-	15시~18시	09시~18시
42	송파구	12-24-1	서울병원	02-405-8500	19시~23시	15시~18시	09시~18시
43		12-24-2	송파성모병원	02-406-3580~1	19시~23시	15시~18시	09시~18시
44		12-24-3	강남수병원	02-423-6262	19시~23시	15시~18시	09시~18시
45		12-24-4	올림픽병원	02-1644-2119	19시~23시	15시~18시	09시~18시
46		12-24-6	서울SKY병원	02-3400-1000	19시~22시	15시~18시	09시~18시
47		12-24-7	DMC의원	02-420-5900	19시~23시	15시~18시	09시~18시
48	강동구	12-25-1	조은마디병원	02-487-1121	19시~23시	15시~18시	09시~18시
49		12-25-2	삼육오열린의원	02-478-0365	19시~22시	15시~18시	09시~18시
50		12-25-3	연세성심의원	02-476-7726	19시~22시	15시~18시	09시~18시

【붙임 2】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서 서식

제 연도-직제-연번호

서울특별시 야간 휴일 진료기관 사업참여기관 지정서

의료기관명 :

소재지 :

진료과목 :

진료시간 : 평일 야간

토요일

일, 공휴일

위 의료기관을 서울특별시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사업 참여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13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붙임 3】

□ 2013년도 사업량 및 예산배부 내역

연번	자치구명	인구현황(명, %)		사업량(건)		예산배부(천원)			
		인구수	비율	의료기관	약국	계	의료기관	약국	홍보자료제작비
1	종로구	173,148	1.7	10,600	10,600	90,095	72,036	12,059	6,000
2	중구	140,807	1.3	8,000	8,000	70,307	55,086	9,221	6,000
3	용산구	255,294	2.4	15,000	15,000	124,724	101,699	17,025	6,000
4	성동구	306,868	2.9	18,200	18,200	149,458	122,886	20,572	6,000
5	광진구	384,269	3.7	23,300	23,300	189,033	156,786	26,247	6,000
6	동대문구	375,683	3.6	22,600	22,600	184,085	152,548	25,537	6,000
7	중랑구	423,655	4.1	25,700	25,700	208,820	173,735	29,085	6,000
8	성북구	490,639	4.7	29,500	29,500	238,500	199,160	33,340	6,000
9	강북구	346,493	3.3	20,700	20,700	169,245	139,836	23,409	6,000
10	도봉구	364,454	3.5	22,000	22,000	179,140	148,312	24,828	6,000
11	노원구	600,829	5.7	35,800	35,800	287,970	241,535	40,435	6,000
12	은평구	505,902	4.8	30,000	30,000	243,450	203,400	34,050	6,000
13	서대문구	324,733	3.1	19,500	19,500	159,351	131,361	21,990	6,000
14	마포구	393,576	3.8	24,000	24,000	193,980	161,024	26,956	6,000
15	양천구	500,533	4.8	30,000	30,000	243,450	203,400	34,050	6,000
16	강서구	573,794	5.5	34,500	34,500	278,085	233,069	39,016	6,000
17	구로구	454,478	4.4	27,600	27,600	223,660	186,448	31,212	6,000
18	금천구	260,734	2.5	15,700	15,700	129,670	105,936	17,734	6,000
19	영등포구	426,876	4.1	25,700	25,700	208,820	173,735	29,085	6,000
20	동작구	416,268	4.0	25,000	25,000	203,873	169,498	28,375	6,000
21	관악구	540,520	5.2	32,600	32,600	263,234	220,347	36,887	6,000
22	서초구	439,998	4.2	26,400	26,400	213,767	177,973	29,794	6,000
23	강남구	569,997	5.5	34,500	34,500	278,076	233,060	39,016	6,000
24	송파구	680,150	6.5	40,800	40,800	327,543	275,434	46,109	6,000
25	강동구	492,728	4.7	29,500	29,500	238,510	199,170	33,340	6,000
총계	25개소	10,442,426	100	627,200	627,200	5,096,846	4,237,474	709,372	150,000

※ 비고

- 인구수 : 2012.12.31.기준

- 사업량 산정 및 예산배정 기준: 의료기관 진료비 평균 6,750원 + 조제료 평균 1,130원 = 7,880원
 예산 / 의료기관 평균 진료비 × 자치구별 인구 비율

【붙임 4】

□ 2012년도 야간·휴일 진료기관 모니터링 결과

구별	번호	의료기관명	총 확인 횟수	시행	미흡	미시행	미시행율(%)	처리결과	비고
종로구	1	로이병원	12	2	2	8	66.7	지정 취소	1/17, 1/29일 19:00시 까지 진료
	2	마로니에의원	12	11	0	1	8.3	계속 유지	1/29일 18:00시 진료 마감
중구	3	정연의원	15	5	4	6	40.0	지정 취소	
용산구	4	보광연세의원	3	3	0	0	0.0	계속 유지	2/5일 19:00시 까지 진료
	5	금강아산병원	3	3	0	0	0.0	"	2/1, 2/5일 20:00시 이전 진료 마감
성동구	6	서울연합의원	15	15	0	0	0.0	"	
	7	이안힐텍소아청소년과의원	3	2	0	1	33.3	"	
광진구	8	제니여성의원	12	2	10	0	0.0	"	22시 야간진료이나 21시까지 시행 중
동대문구	9	서울연세의원	15	15	0	0	0.0	"	
	10	연세이문소아과의원	15	15	0	0	0.0	"	
중랑구	11	연세플러스의원	3	2	0	1	33.3	"	
성북구	12	성북성심신경과의원	13	5	0	8	61.5	지정취소	
	13	성북중앙병원	13	13	0	0	0.0	계속유지	응급실로 운영됨
강북구	14	서울병원	13	13	0	0	0.0	"	응급실로 운영됨
도봉구	15	도봉병원	13	13	0	0	0.0	"	응급실로 운영됨
	16	바로선병원	13	13	0	0	0.0	"	응급실로 운영됨
노원구	17	메디홈즈의원	13	13	0	0	0.0	"	
	18	365열린의원	13	13	0	0	0.0	"	
은평구	19	서울다나의원	4	4	0	0	0.0	"	
	20	기분좋은연세365의원	13	12	0	1	7.7	"	
서대문구	21	연세365의원	4	4	0	0	0.0	"	
마포구	22	합정연세365의원	13	13	0	0	0.0	"	
양천구	23	지성의원	14	14	0	0	0.0	"	
강서구	24	뉴강서성심병원	14	12	1	1	7.1	"	1/16일 21:00시 까지 진료
	25	이화플러스의원	5	4	0	1	20.0	"	1/27일 마트휴무로 인한 미시행
	26	연세메디플러스의원	5	4	0	1	20.0	"	1/27일 마트휴무로 인한 미시행
구로구	27	김형수의원	14	14	0	0	0.0	"	
금천구	28	연세베스트의원	14	8	3	3	21.4	"	1/16, 1/23, 1/30일 20:30시 까지 진료
영등포구	29	서울복지병원	14	14	0	0	0.0	"	응급실로 운영됨
동작구	30	동작경희병원	14	14	0	0	0.0	"	응급실로 운영됨
	31	정동병원	14	14	0	0	0.0	"	응급실로 운영됨
	32	사랑의병원	14	14	0	0	0.0	"	응급실로 운영됨
관악구	33	강남중앙병원	14	14	0	0	0.0	"	응급실로 운영됨
	34	청해의료재단 제일병원	11	11	0	0	0.0	"	응급실로 운영됨
강남구	35	제일정형외과병원	3	3	0	0	0.0	"	
송파구	36	서울병원	11	11	0	0	0.0	"	응급실로 운영됨
	37	송파성모병원	11	11	0	0	0.0	"	응급실로 운영됨
	38	강남수병원	11	11	0	0	0.0	"	응급실로 운영됨
	39	올림픽병원	11	11	0	0	0.0	"	응급실로 운영됨
	40	송파병원	11	5	1	5	45.5	지정 취소	
	41	서울SKY병원	11	3	8	0	0.0	계속 유지	평일, 주말 모두 20:00시 까지 진료
	42	DMC의원	11	10	0	1	9.1	"	응급실로 운영됨
강동구	43	조은마디병원	11	11	0	0	0.0	"	응급실로 운영됨
	44	삼육오열린의원	11	11	0	0	0.0	"	
	45	연세성심의원	11	11	0	0	0.0	"	
합 계			493	426	29	38	7.7		-

【붙임 5】

지원비 청구 양식

<양식1. 진료기관 청구 양식>

야간 휴일 진료기관 청구내역								
연 번	진료일자 (진료시간)	환자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진료 과목	상병명 (질환명)	외래 처방	비 고
1	2013.11.01. (19:04)	홍길동			MED	URI	○	
2								

<양식2. 약국 청구 양식>

야간 휴일 약국 지원내역							
연번	조제일자 (조제시간)	환자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조제 일수	처 방 기관명	비고
1	2013.11.01. (19:04)	홍길동					
2							

【붙임 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제1호관련)

1. 응급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체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상실
- 사. 알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리지 반응
-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라. 출혈 : 혈관손상
-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C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